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769
----------	-------

발의연월일 : 2025. 9. 8.

발 의 자 : 김원이 · 서삼석 · 김남근
한준호 · 정진욱 · 서미화
김동아 · 오세희 · 김승원
허종식 의원(10인)

제안이유

코로나19 이후 배달앱 등 외식중개플랫폼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해당 거래액이 급증하였음. 통계청에 따르면 온라인 음식 서비스 거래액은 2020년 17조 3,371억원에서 2024년 36조 9,891억원으로 증가해 5년 새 시장 규모가 2.1배 성장했음.

그러나 배달앱 등에 입점한 소상공인은 높은 중개수수료와 광고비 등으로 인한 경영 부담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음. 플랫폼사들이 소상공인의 경영환경과 지급여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수수료율을 결정하는 등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옴.

실제로 외식업 소상공인들은 중개수수료, 배달료, 각종 추가 광고비 등을 포함하여 통상 매출액의 20% 내외를 플랫폼사에 지불하는 실정이라는 내용이 보도되고 있음.

민간 주도의 배달앱 자율규제로는 중개수수료 문제 등 핵심 쟁점이

해결되지 않고 있어, 소상공인 부담 경감과 보호를 위한 제도적인 규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예컨대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외식중개플랫폼의 서비스 이용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한의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하의 영세 이용사업자에 대하여 우대 이용료를 적용하여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보호하고자 함.

또한, 외식중개플랫폼 사업자가 서비스 이용료의 조정 요구 관련 중소기업부장관의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시 일정 기간의 영업정지명령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외식중개플랫폼의 서비스 이용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한의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하의 영세 이용사업자에 대하여 우대 이용료를 적용하도록 함(안 제15조의8 신설)

나. 외식중개플랫폼 사업자가 서비스 이용료의 조정 요구 관련 중소기업부장관의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시 일정 기간의 영업정지명령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의2 및 제

31조 신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외식중개플랫폼”이란 외식사업자로부터 이용대가를 받고 정보통신설비를 통해 구축된 전자적 시스템을 이용하여 소비자의 청약을 접수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외식중개플랫폼 사업자”란 외식중개플랫폼에 따른 서비스 제공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6. “이용사업자”란 외식중개플랫폼을 이용하는 외식사업자를 말한다.
7. “외식중개플랫폼 서비스 이용료”(이하 “서비스 이용료”라 한다)란 이용사업자가 외식중개플랫폼을 이용함에 따라 외식중개플랫폼 사업자에 지급하는 금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3장의2에 제15조의8 및 제15조의9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8(외식중개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① 외식중개플랫폼 사업자는 서비스 이용료를 정함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한의 범위 내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이용사업자의 서비스 이용료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외식중개플랫폼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서비스 이용료를 정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식중개플랫폼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영세한 이용사업자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서비스 우대 이용료를 적용하여야 한다.

제15조의9(서비스 이용료의 조정 요구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5조의8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정하도록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장에 제27조의2(영업정지명령)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영업정지명령)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외식중개플랫폼 사업자가 제15조의9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8장에 제31조(과징금)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과징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외식중개플랫폼 사업자가 제15조의9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갈음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4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u><신 설></u>	제2조(정의) ----- -----. 1. ~ 3. (현행과 같음) 4. “외식중개플랫폼”이란 외식 사업자로부터 이용대가를 받 고 정보통신설비를 통해 구축 된 전자적 시스템을 이용하여 소비자의 청약을 접수하는 서 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것을 말한다. 5. “외식중개플랫폼 사업자”란 외식중개플랫폼에 따른 서비 스 제공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6. “이용사업자”란 외식중개플 랫폼을 이용하는 외식사업자 를 말한다. 7. “외식중개플랫폼 서비스 이 용료”(이하 “서비스 이용료” 라 한다)란 이용사업자가 외 식중개플랫폼을 이용함에 따 라 외식중개플랫폼 사업자에 지급하는 금전으로서 대통령

<신 설>

<신 설>

령으로 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15조의8(외식중개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① 외식중개플랫폼 사업자는 서비스 이용료를 정함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한의 범위 내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이용사업자의 서비스 이용료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외식중개플랫폼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서비스 이용료를 정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식중개플랫폼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영세한 이용사업자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서비스 우대 이용료를 적용하여야 한다.

제15조의9(서비스 이용료의 조정 요구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5조의8제1항 또는 제3항

<u><신 설></u>	<u>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정하도록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u> <u>제27조의2(영업정지명령)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u> <u>외식중개플랫폼 사업자가 제15조의9에 따른</u> <u>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u> <u>에서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u> <u>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u>
<u><신 설></u>	<u>제31조(과징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u> <u>외식중개플랫폼 사업자가 제15조의9에 따른</u> <u>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갈음</u> <u>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4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u> <u>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u> <u>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u>